

파주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「파주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「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10월 2일

파 주 시 장

1. 자치법규명: 파주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

2. 개정이유

- 「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참고안」 개정에 따라 서류전형 심사위원 위촉 기준 및 자격증 관련 사항 정비

3. 주요내용

- 서류전형 시험위원의 외부위원 위촉 예외규정을 삭제하여 위촉 기준을 변경함(안 제12조)
- 현행 실정에 맞지 않는 우선임용 규정을 삭제함(안 제24조)
- 국가기술자격법령 개정('23.~'25.)에 따른 자격증 통합 및 명칭 현행화(안 별표 5의2, 별표 6, 별표 7, 별표 7의4)
- 자격증 가산 대상 직렬(류)에서 사회복지직·의료기술직 삭제(안 별표 7의4)
- 법령명 띄어쓰기와 약칭 등 인용 표기를 현행 법령체계에 맞게 정비함(안 전반)

4. 개정규칙안 : 별첨

규칙안 전문은 파주시 홈페이지(<http://www.paju.go.kr>) 입법예고란에 게시

5. 의견제출

가. 제출기일 : 2026년 10월 22일까지(20일간)

나. 제출방법 : 서면·우편·팩스 등

다. 기재내용 : 성명·주소·생년월일·연락처·의견

라. 제출기관 : 파주시장(행정지원과 인사팀)

○ 주소 :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, 행정지원과 인사팀(우 10932)

○ 전화 : 031-940-4126 / 팩스 031-940-4109 / 이메일 doevthing@korea.kr

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자치법규명 : 파주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생 년 월 일 :

○ 전 화 번 호 :

개정안 내용	의견	비고

➡ 민원인 편의고려, 임의서식임(의견제출 관련 정해진 서식은 없으며 필수 기재내용작성 후, 자유롭게 제출)